

글로벌  
리포트

담수생물 및 생물 관련 분야의  
글로벌 동향 및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 나고야의정서와 생물자원을 둘러싼 국제 관계

생물은 오랫동안 인류의 활용 대상이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생물에 대한 상업적 접근과 이윤창출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게 되었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1992년 6월 생물다양성협약<sup>CBD</sup>: <sup>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sup>이 체결되었으며 1993년 12월 29일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공유<sup>Benefit-Sharing</sup>의 개념은 CBD협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개념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책임을 개발도상국만 부담하고 유전자원에서 유래하는 이익을 선진국이 독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sup>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sup>: ABS라는 내용이 CBD의 목적 조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익 공유를 명시한 CBD 제15조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제 제정에 대해 각국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물론 유전자원 원산국들이 강한 규제를 주장한 데 비해 그동안 생물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한 국가들은 법적 규제 제정에 상당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자원 이용국 입장이었던 EU, 미국, 일본 등이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협상이 여러 차례 지속되었고, 10여 년에 걸친 오랜 협상 끝에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CBD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극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전용일·배정생: 379-386).

ABS 실현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나고야 의정서 체결로 각국의 생물자원 주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PIC와, MAT 체결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IC는 생물유전자원 및 관

련 전통지식 이용자가 해당 자원제공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전 통보승인<sup>PIC</sup>을 말하고, MAT는 자원 활용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상호 합의조건<sup>MAT</sup>을 말합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사전허가와 계약을 관리하게 하고, 이익 공유에 대해 합의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다른 국가의 생물유전자원을 공짜로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나고야의정서 체결을 기점으로 각 국의 대응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동·식물종의 70%이상을 보유한 자원제공국들은 협상 그룹을 결성하여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생물자원 관리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생물자원 부국 협상그룹을 결성하고 아세안, 환경개발 중남미위원회, 아프리카연합 등 국가연합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선진국이면서 자원제공국에 해당하는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ABS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원이용국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일본, EU 등 자원이용국은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의 투명성과 간편성 등을 강조하고 자원제공국의 능력배양 지원을 통해서 자원제공국과의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박은진·이상우·이양주: 1-9).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응에 주시하면서 한반도 생물자원의 보호와 DB화, 해외 생물자원의 발굴, 관련 법·정책 정비와 인식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칼럼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ABS 대응 동향을 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 주요 용어

- Benefit-Sharing(이익공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 합의된 조건(MAT)에 따라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CBD 제15조 제7항)
- Biopiracy(생물해적행위): 특정 국가의 유전자원을 사전승인 또는 공정한 이익 공유 없이 이용하는 경우로 Misuse 또는 Misappropriation으로 사용되기도 함
-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유전자원의 이용):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한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 개발을 수행 (나고야 의정서 제2조)

## 참고문헌:

전용일·배정생(2015).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국제규범과각국의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대응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44, pp. 379-413.  
박은진·이상훈·이양주(2012). “생물자원 전쟁이 시작된다”. 『이슈&진단』 62. 경기발전연구원. pp. 1-25.

글 원생생물자원조사부 최강국  
대외협력부 정소정

